

뇌물을 받은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죄로 처벌 받을까?

Can bribery charge be applied to committee member of architecture who taken bribes?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시·군·구(자치구)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라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라 합니다(건축법 제4조 등).

중앙건축위원회는 70명 이내의 위원, 지방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건축 관련 전문가인 '건축사'분들이 건축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 건축 등)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권의 유혹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도 광역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안입니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5692 판결). 그런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 및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뇌물죄'는 그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가법 제4조에서 뇌물죄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개별 법령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또한 제105조에서,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89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바꾸어 말하면, 특별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자는 부정한 돈을 받아도 뇌물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배임수재죄' 등 다른 죄가 될 수도 있지만, 뇌물죄보다는 형량이 낮으며,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05조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 위원이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여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5692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뇌물죄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건축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의 내용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더하여 볼 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뇌물죄로 기소된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주위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 '뇌물죄'로 재판받거나 수사 받는 건축사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알려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